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17호

**도시관리계획 [한양대역세권(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원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572호(2026.4.16.)로 열람 공고하고, 2026년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06.10.)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78호(2010.03.0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호(2014.0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77호(2014.03.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17호(2017.1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3호(2018.0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호(2020.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2호(2021.0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4호(2025.08.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5호(2025.08.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40호(2025.11.20.)로 결정(변경)된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I. 결정(변경)취지

- 한양대역세권(행당동 31-1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한양대역세권(행당동 31-1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 및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① 한양대역세권(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한양대역세권 (행당동 31-1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원	-	증)21,800.7	21,800.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①	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원	21,800.7	- 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대의 노후된 주거환경 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1,800.7	-	21,800.7	100.0	
주 거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5,217.6	감)13,808.5	1,409.1	6.5	
	제3종일반주거지역	6,583.1	감)6,453.0	130.1	0.6	
	준주거지역	-	증)20,261.5	20,261.5	92.9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기반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44	주간선	5,910	행당동 행당광장	성동교앞 (행당동 71-9)	일반도로	긴고2493 '66.6.21.	왕십리로
변경	대로	1	16	35~44 (36)	주간선	5,910 (186)	행당동 행당광장	성동교앞 (행당동 7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48	20.5~25.5	집산도로	444	행당동 20-7	행당동 77-1	일반도로	'08.07.31	살곶이길
변경	대로	3	A	20.5~30 (30)	집산도로	444 (285)	행당동 20-7	행당동 77-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57	행당동 37-5	행당동 37-31	일반도로	-	살곶이 8길

※ ()는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6	대로 1-16	- 폭원(B) : 35~44m (구역 내 36m) - 연장(L) : 5,910m (구역 내 186m)	- 왕십리로 교통시설 체계를 고려한 폭원 확장
중로 1-448	대로 3-A	- 폭원(B) : 20.5~30.0m (구역 내 30m) - 연장(L) : 444m (구역 내 285m)	- 살곶이길의 증가되는 교통수요를 반영한 폭원 확장
-	소로 3-A	- 폭원(B) : 6m (구역 내 6m) - 연장(L) : 57m (구역 내 57m)	- 기존 협소한 현행도로의 재정비 및 긴급 차량의 진입로 확보 등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행당동 39-5번지 일원	-	증)488.3	488.3	-	

건폐율(%)	용적률(%)	높이(m)
60% 이하	400% 이하	50m 이하

■ 사회복지시설 결정사유서

구 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신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설	-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결정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지번호	면 적(m ²)	위 치	비 고
신설	①	19,773.2	행당동 31-11번지 일원	공동주택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용 도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 ①	허용용도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음 각 항목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 적 률	기 준 ◦ 216.32%
		상 한 ◦ 500.00% 이하
	최고높이	◦ 150m 이하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태	◦ 탑상형 위주 배치 - 대형필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시야확보 및 랜드마크 부여 - 가로변 시각통로 확보 및 고층부 개방감 부여	
외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유채색 계통으로 주변과의 조화 유도
	재료	◦ 주변 경관과 조화된 재료 선택 유도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5.1.24.) 준용

■ 공공기여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공공기여 기준	기준용적률		◦ 216.32% 이하
	상한용적률		◦ 500% 이하
	완화용적률의 1/2		◦ 141.84% 이상 - 완화용적률(283.68%)의 1/2 이상 부지면적 환산 5,609.26㎡
공공기여 제공계획	총 공공기여 제공량		◦ 142.00% - 장기전세주택 98.40% - 공공시설 43.60% 부지면적 환산 5,635.14㎡
	공공기여시설	장기전세주택	◦ 총 208세대(59㎡, 84㎡) 계획 계획기준 전용 84㎡ 이하
		공공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 - 연면적: 1,900.0㎡ - 규모: 지하1층~지상7층 - 용도: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 도로 : 550.71㎡ 토지면적 기준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형태 등은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구 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필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공동주택 또는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으로 계획 ◦ 적합 여부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참조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라멘구조)																
	환경성능부문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 분을 적용하여 ㉠ 환경성능부문 ㉡ 에너지성능부문 ㉢ 에너지관리부문 ㉣ 신·재생 에너지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	㉡기준으로 상향 적용																
	에너지성능 부문	<table><tr><th>구분</th><th>주거</th><th>비주거</th></tr><tr><td>㉠</td><td>1,000세대 이상</td><td>연면적 합계 10만㎡ 이상</td></tr><tr><td>㉡</td><td>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td><td>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td></tr><tr><td rowspan="2">에너지관리 부문</td><td>㉢</td><td>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td><td>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td></tr><tr><td>㉣</td><td>30세대 미만</td><td>연면적 합계 3천㎡ 미만</td></tr></table>	구분	주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에너지관리 부문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미만	㉡기준으로 상향 적용
		구분	주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에너지관리 부문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미만															
신·재생에너지	◦ 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적용대상의 구분이 최상 일 경우(㉠)는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과 동일 고시의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5등급 추가 적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계획내용을 착공 전까지 예비 인증, 사용승인 시 인증받아야 함		㉣기준 적용																
	역사문화보전	◦ 사업대상지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 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		해당없음															
권장	커뮤니티 지원시설	◦ 공동주택 거주자와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민들의 일 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입안권자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필요 시 설치		-															

라) 공공기여 산정

■ 장기전세주택 설치계획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대지지분
59A	20세대	59.98㎡	88.09㎡	354.16㎡
59B	148세대	59.98㎡	86.45㎡	2,571.86㎡
소 계	168세대	10,076.64㎡	14,556.40㎡	2,926.02㎡
84A	8세대	84.98㎡	122.08㎡	196.32㎡
84B	32세대	84.95㎡	122.62㎡	788.75㎡
소 계	40세대	3,398.24㎡	4,900.48㎡	985.07㎡
합 계	208세대	13,474.88㎡	19,456.88㎡	3,911.09㎡

※ 추후 공공기여계획 및 기준에 따라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공공기여 산정

구 분	산출값		비 고
대지지분	488.3㎡		◦ 기부채납 토지의 대지면적
연면적	1,900.0㎡		◦ 건축계획(안)에 따른 연면적
공사비 산정	건축비	7,733,000,000원	◦ 「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 노인복지센터 4,477,000원/㎡ ◦ 연면적 X 건축비 단가 / 부가세 = 1,900㎡ X 4,477,000원/㎡ / 1.1
	설계비	330,189,356원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제2절 3-2-2. 적용 ◦ 7,733,000,000원(건축비) X (4.270(설계비율) / 100)
	감리비	81,475,043원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제2절 3-2-2. 적용 ◦ 7,733,000,000원(건축비) X (1.054(감리비율) / 100)
총 공사비	8,144,664,399원		◦ 건축비 + 설계비 + 감리비 ◦ 7,733,000,000원 + 330,189,356원 + 81,475,043원 = 8,144,664,399원
부지가액	11,889,238원		◦ 2025년 공시지가 X 2 ◦ 5,944,619원/㎡ X 2 = 11,889,238원
환산부지면적	685.05㎡		◦ 연면적 X 건축비 / 부지가액 ◦ 1,900㎡ X 8,144,664,399원 / 11,889,238원 = 685.05㎡
기부채납 면적	1,173.35㎡		◦ 대지지분 + 환산부지면적 ◦ 488.3㎡ + 685.05㎡ = 1,173.35㎡

※ 「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추후 공공기여계획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여 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준/상한 용적률	216.32% / 500% 이하	- 기준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중평균 값 - 상한용적률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
용적률 증가분	283.68%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500\% - 216.32\% = 283.68\%$
증가 용적률의 ½	141.84%	용적률 증가분의 50% : $283.68\% \times 50\% = 141.84\%$ 이상
증가용적률 ½의 대지지분 (A)	5,609.26㎡	획지면적 × (장기전세주택 지상부연면적 ÷ 전체 지상부연면적) $= 19,773.2\text{㎡} \times ((19,773.2\text{㎡} \times 141.84\%) \div (19,773.2\text{㎡} \times 500\%))$
기반시설 제공 대지지분 (B)	1,724.06㎡ (43.60%)	- 대지지분 : 기반시설 면적 × 기반시설 용적률 ÷ 상한용적률 $= \{(1,214.2\text{㎡} \times 200\%) + (130.1\text{㎡} \times 250\%) + (1,173.3\text{㎡} \times 500\%)\} \div 500\%$ - 용적률: 기반시설 면적 × 기반시설 용적률 ÷ 획지면적 $= \{(1,214.2\text{㎡} \times 200\%) + (130.1\text{㎡} \times 250\%) + (1,173.3\text{㎡} \times 500\%)\} \div 19,773.2\text{㎡}$
장기전세주택 필요 대지지분 (A-B)	3,885.20㎡ (98.24%)	장기전세주택 대지지분 - 기반시설 대지지분 $= 5,609.26\text{㎡} - 1,724.06\text{㎡}$
장기전세주택 계획 대지지분	3,911.09㎡ 계획 (208세대, 98.40%)	획지면적 × (장기전세주택 공급면적 ÷ 용적률산정용 전체연면적) $= 19,773.2\text{㎡} \times (19,456.88\text{㎡} \div 98,365.90\text{㎡})$

※ 추후 공공기여계획 및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보도 부속형)	건축한계선 3m
공공보행통로	원활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6m 이상 폭원 확보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인센티브 운용 계획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나).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
 - 1)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 2)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변경)

■ 계획내용(변경)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가능구역	행당동 32-1번지 일대	8,390.0	감)6,871.0	1,519.0	-

■ 계획내용 변경 사유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변경사유
특별계획 가능구역	행당동 32-1번지 일대	1,519.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 중첩 구역을 제척으로 인한 변경

- 3) 특별계획가능구역 일반지침 : 변경없음

- 이하 여백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기정)

가 구		위 치		면적(㎡)	공동개발	비고
번호	면적(㎡)	동명	지번			
A35	8,390	행당동	27-3	20		
			27-6	46		
			27-7	17		
			28-7	510	지정	
			28-19	540		
			28-16	50		
			28-11	46	지정	
			28-23	69		
			28-12	119		
			28-13	102		
			28-6	43	지정	
			28-24	73		
			31-8	7		
			31-17	63		
			28-29	23		
			31-2	294		
			31-4	26	지정	
			31-9	23		
			31-11	397		
			31-10	50	지정	
			31-7	400		
			31-22	86		
			31-12	96		
			31-13	102		
			31-14	156		
			31-20	134		
			31-21	47		
			32	142		
			32-1	291		
			32-2	142		
			32-3	102		
			32-5	40		
			32-6	431		
			32-43	79		
			32-9	50		
			32-11	50		
			32-12	30		
			32-13	30		
			32-14	202		
			32-15	53		
			32-16	53		
			32-17	96		
			32-18	20		

가 구		위 치		면적(㎡)	공동개발	비고
번호	면적(㎡)	동명	지번			
A35	8,390	행당동	32-19	56		
			32-20	13		
			32-21	36		
			32-22	36		
			32-23	26		
			32-24	149		
			32-25	142		
			32-26	119		
			32-27	122		
			32-28	96		
			32-29	106		
			32-30	116		
			32-31	205		
			32-32	195		
			32-33	182		
			32-34	165		
			32-35	152		
			32-36	66		
			32-37	136		
			32-38	252		
			32-40	7		
			32-45	40		
			32-46	6		
			32-47	58		
			32-48	94		
			33	66		
			33-5	50		
			33-6	46		
			33-7	136		
			33-8	57		
			33-9	86		
			33-10	19		
			32-44	5		

※ 상기면적은 측량성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최대개발규모는 적용하지 않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구		위 치		면적(㎡)	공동개발	비고
번호	면적(㎡)	동명	지번			
A35	1,519	행당동	27-3	20		
			27-6	46		
			27-7	17		
			28-7	510	지정	
			28-19	540		
			28-16	50		
			28-11	46		
			28-23	69	지정	
			28-12	119		
			28-13	102		

※ 상기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최대개발규모는 적용하지 않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이하 여백 -

Ⅲ. 관련도서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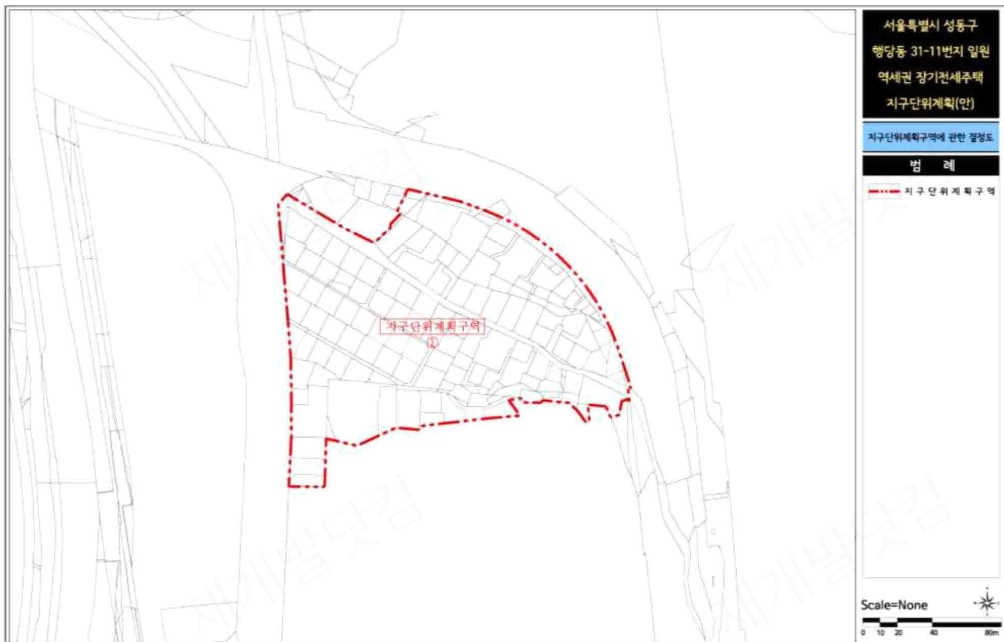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고시 관련 세부 내용은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0)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53)에 관계 도서를 비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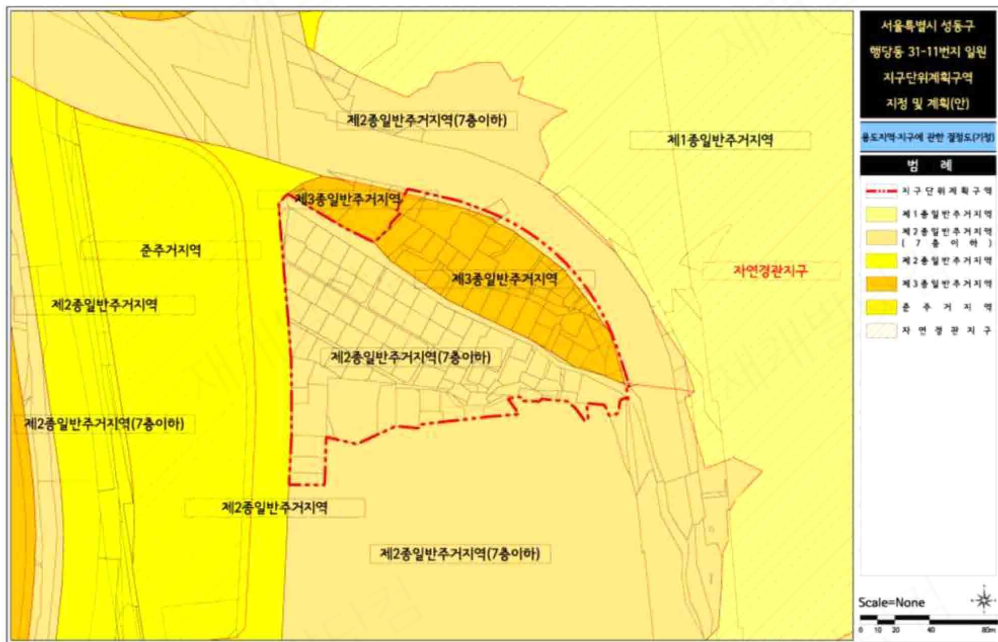
- 고시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결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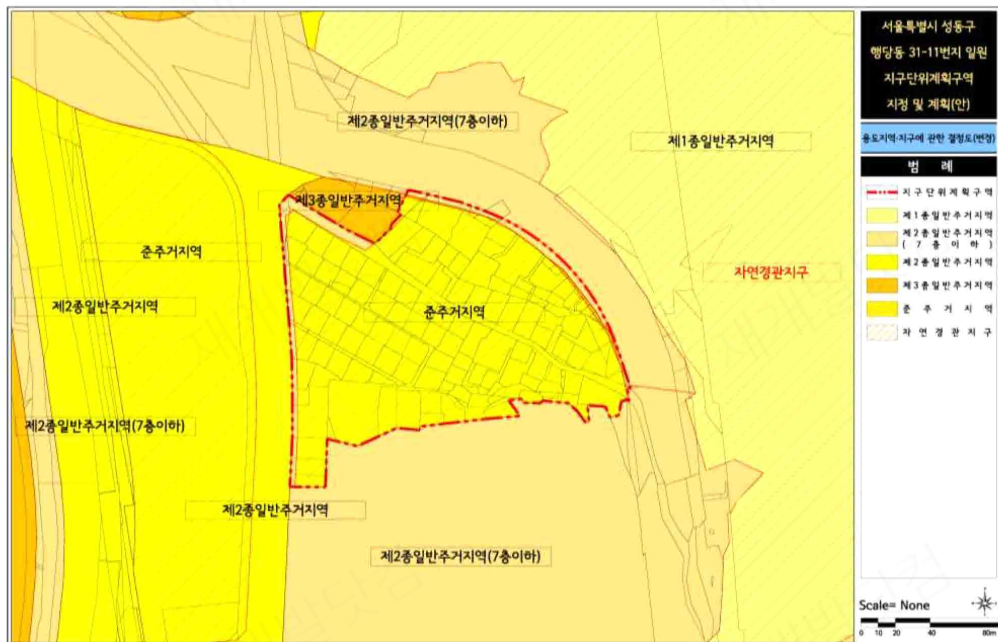
<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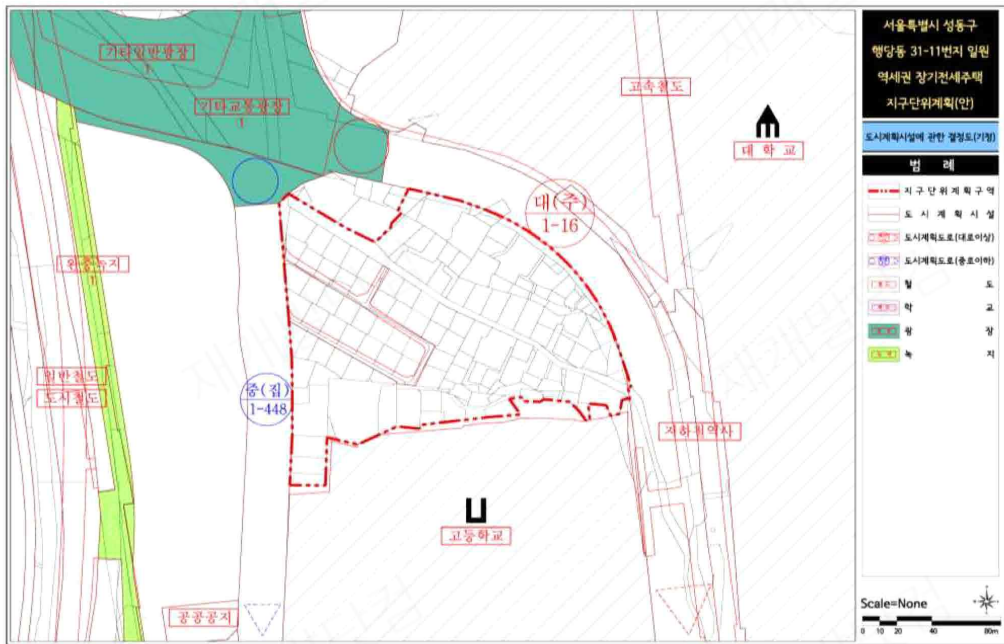
<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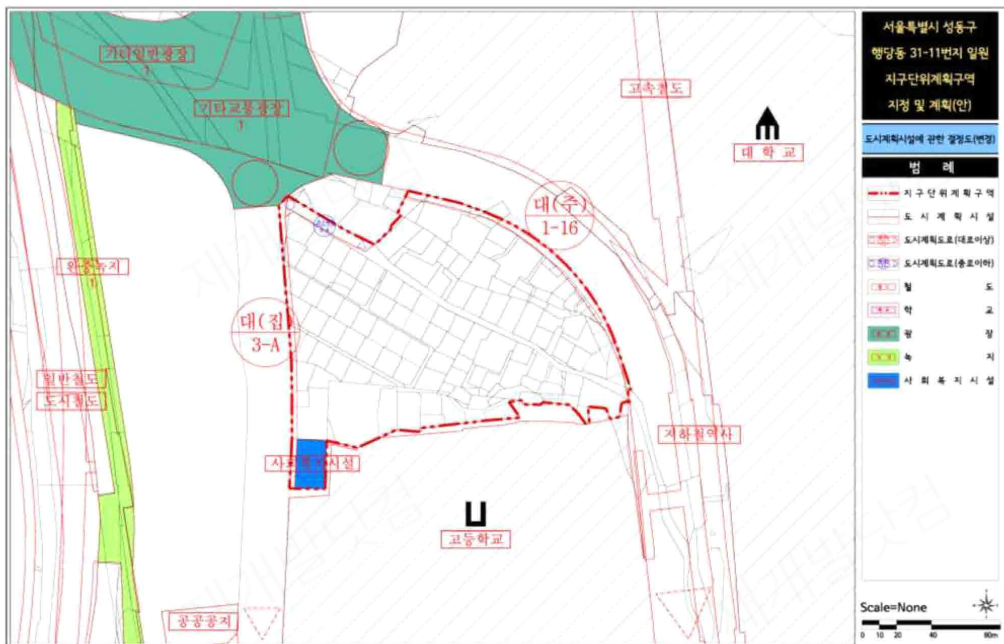
<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도 >



<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확치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요

범례

- 사업대설치
- 확치선
- 확치
- 확치변호
- 사회복지시설
- 건축한계선 (3m)
- 천변골지

구분

계획내용

① 확치 (A)

구분: 1. 건축업시설, 2. 공공시설, 3. 기타시설

계획내용: 1. 건축업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2. 공공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3. 기타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확치: 1. 건축업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2. 공공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3. 기타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확치변호: 1. 건축업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2. 공공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3. 기타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1. 건축업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2. 공공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3. 기타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건축한계선 (3m): 1. 건축업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2. 공공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3. 기타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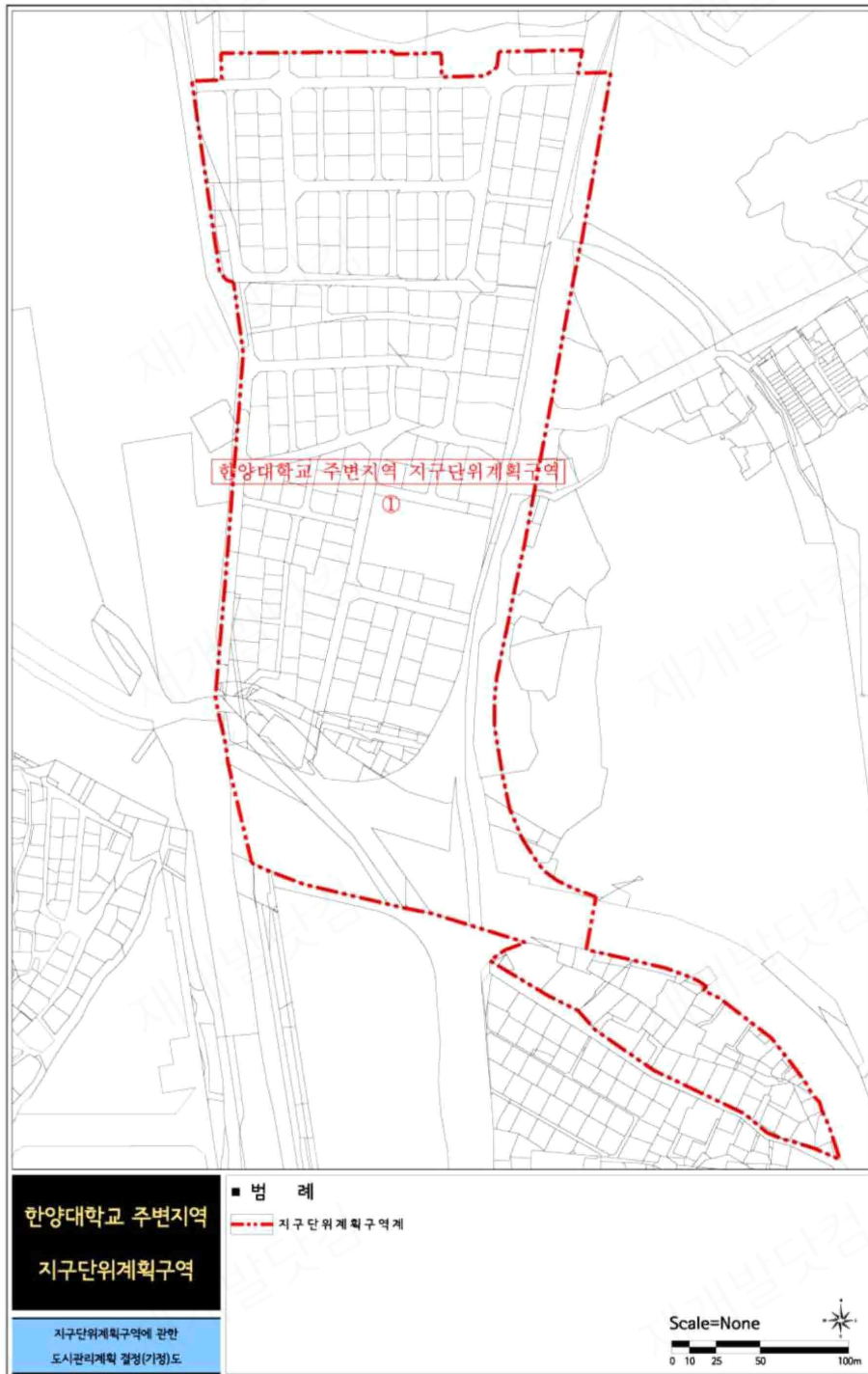
천변골지: 1. 건축업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2. 공공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3. 기타시설: 행당동 31-11번지 일원

Scale=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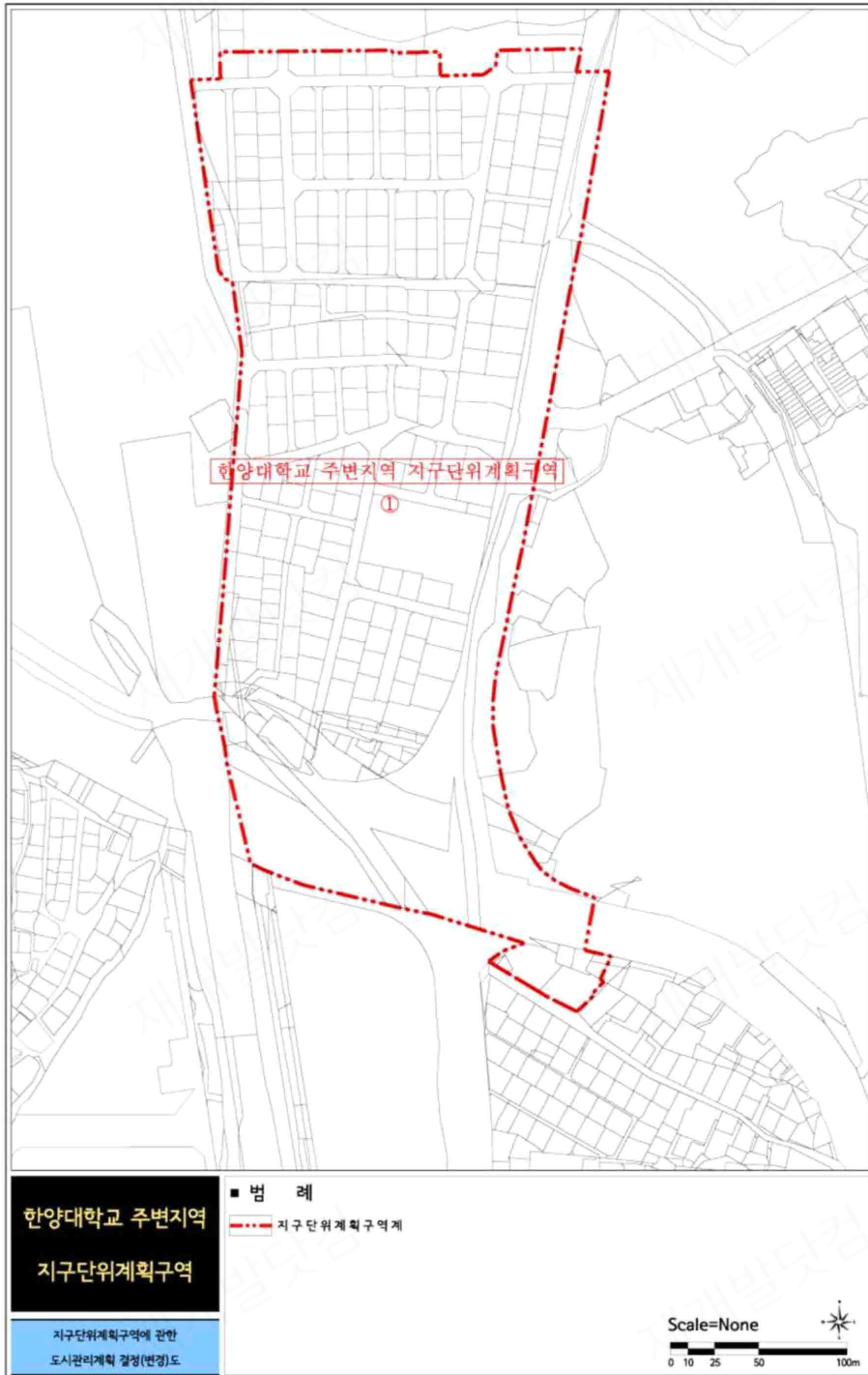
0 10 20 40 60

Figure 1 is a detailed map of the area around the proposed site. The map shows various land use zones including residential areas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commercial areas (상업지역), and public facilities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The proposed site is highlighted in yellow and labeled '제2종일반주거지역(7종이하)'. The map also shows the location of the proposed site relative to the surrounding areas and the proposed developmen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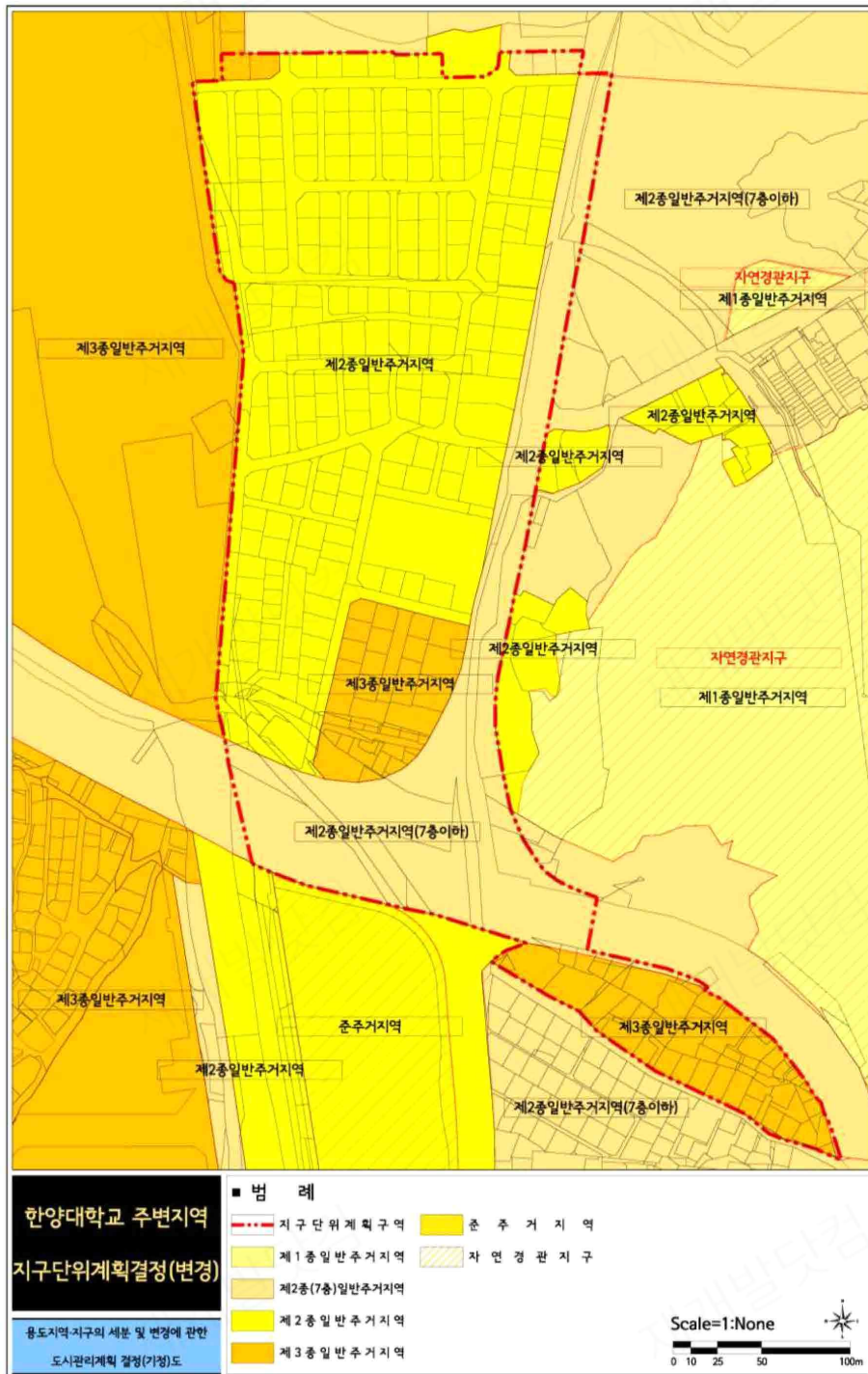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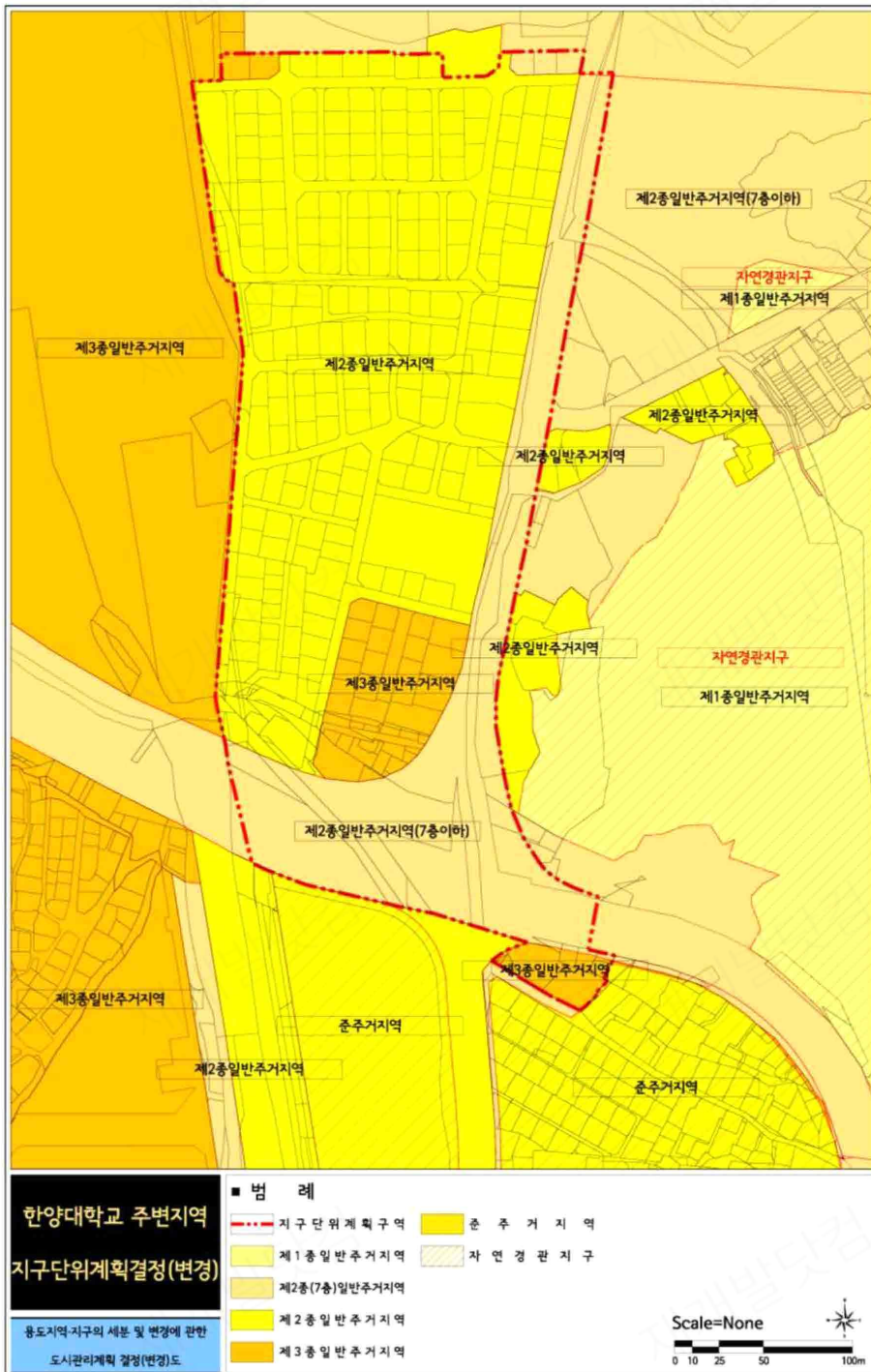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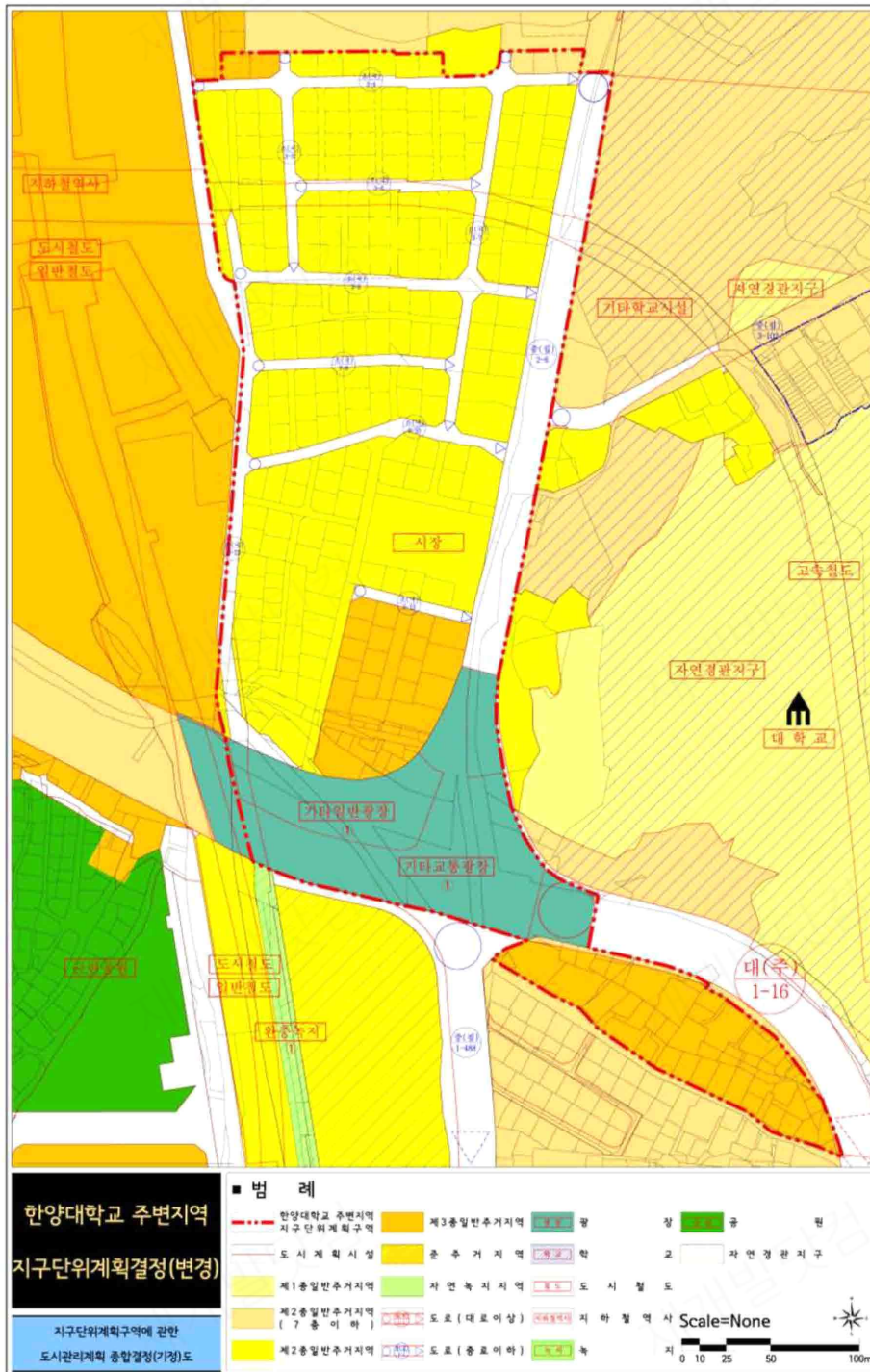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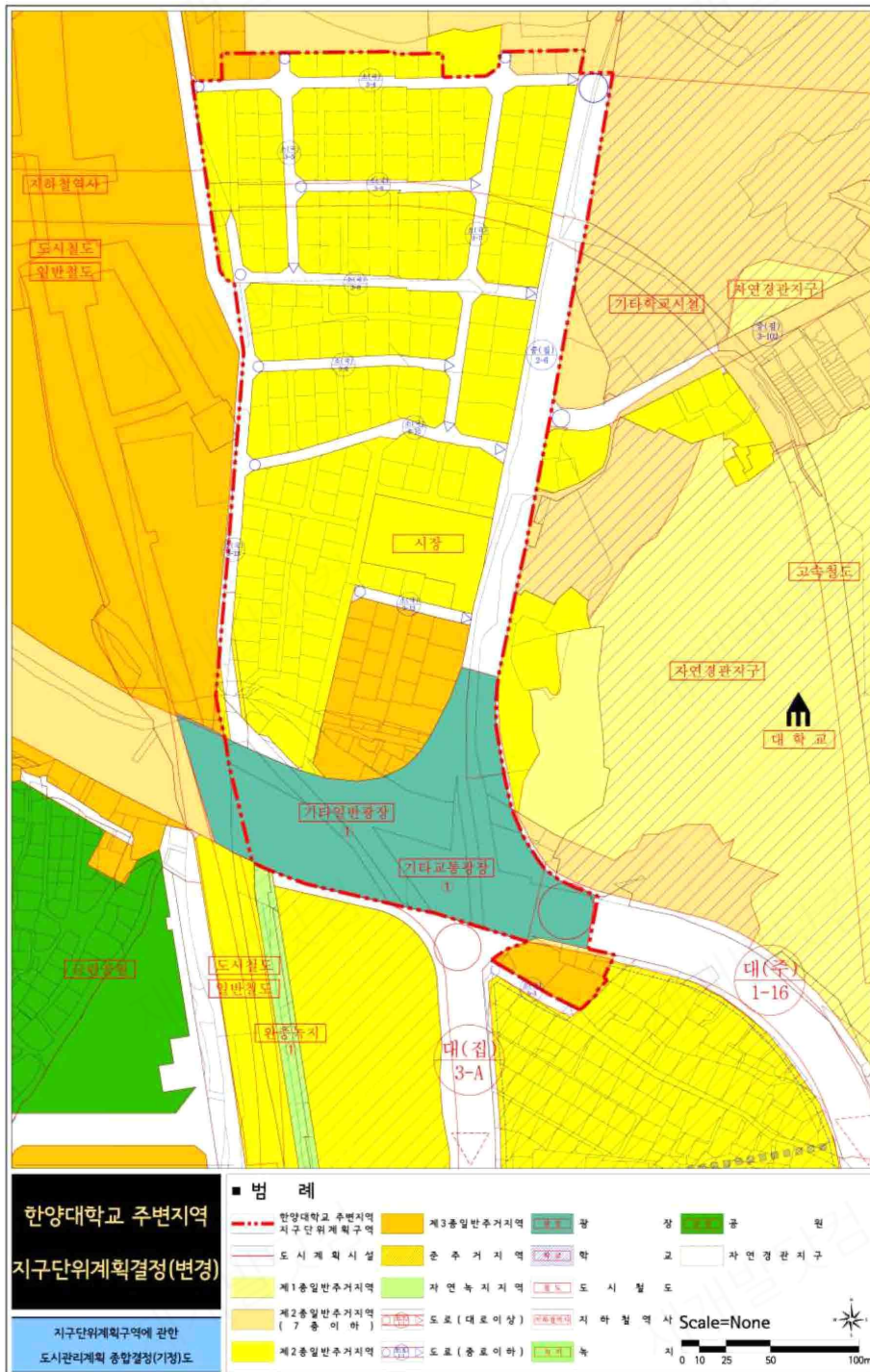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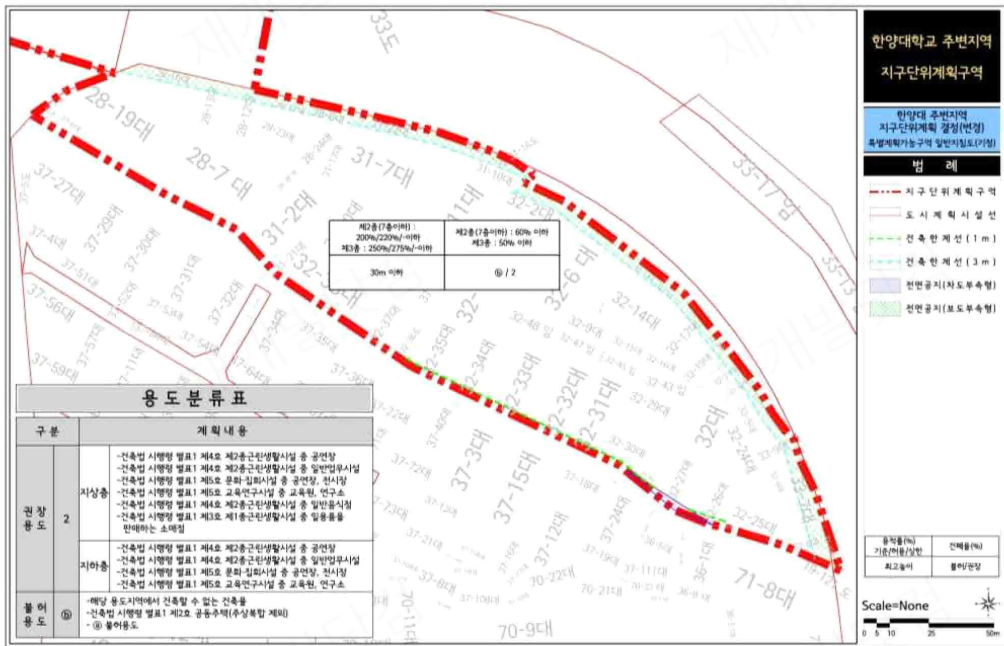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종합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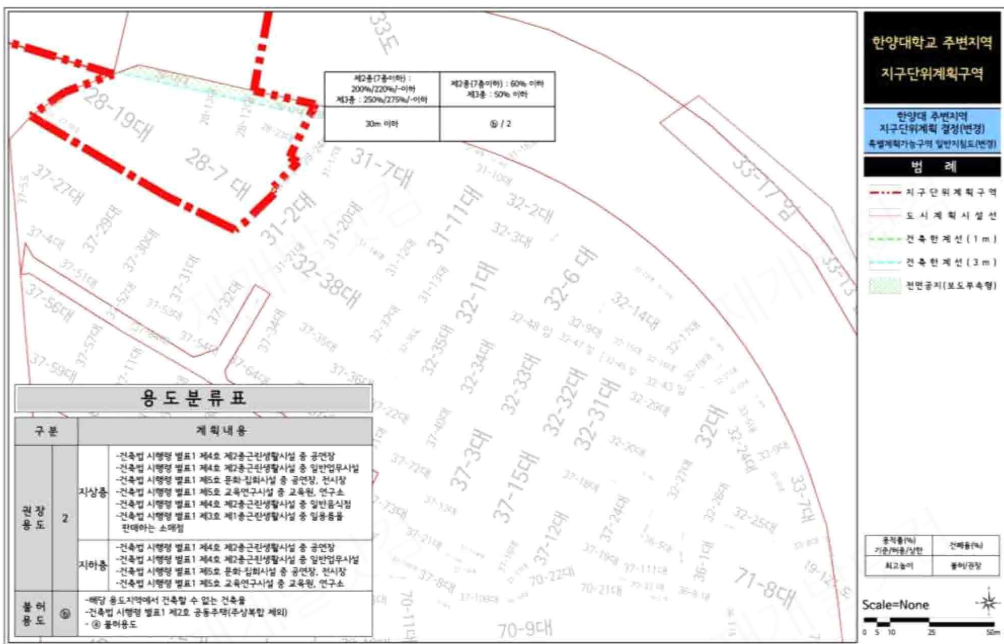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종합결정(변경)도 >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지침도(기정) >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지침도(변경) >



- 이하 여백 -